

2026년 제1회 한시임기제공무원(8호, 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대구교도소에서 202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공무원(8호, 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대구교도소장

1 임용 예정 인원 (1개 분야, 총 1명)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 부서 (근무지)
간호직	한시임기제 8호 (주 35시간)	1명	임용일 ~ '27. 11. 9.	대구교도소 의료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 최종합격자는 대구교도소 간호직 공무원(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됨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7. 11. 9.까지
 - ※ 임용기간은 임용일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관 특성상 시간외·야간·휴일 근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간호직	한시임기제 8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외상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3항 -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 동행 및 계호

※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6항, 제22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제22조의 5(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6490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7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535호)

4 응시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 간호사 면허증은 국내 면허에 한함

5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가. 직무 관련분야 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여 우대사항으로 인정
- 직무 관련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 발행기관의 날인,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상 근무 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 형태(주당 근무시간)가 명시되고 발급확인자의 성명과 연락처(직장연락처)가 포함된 경우, 인정될 수 있음(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통상근로(전임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예시: 주 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 × 2년)]
 -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관련 근무 경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관련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직무 관련 경력 인정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①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③ 소득금액증명원 세 가지 모두 제출한 경우, 세 가지 서류에서 근무 이력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나. 직무 관련 자격증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

구 분	직무 관련 자격증
A급	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의사사, 약사, 한약사
B급	정신건강간호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조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C급	보건교육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 통산·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

구 분 등 급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A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B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라.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산(만점의 10% 또는 5%)
 - 가산점 부여 조건
 - ☞ 해당자는 가산점 비율이 표시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은 응시 자격 요건 충족(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직무 관련분야의 1년 이상 경력에 대해서 차등 배점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첨부

○ 직무 관련분야 경력 인정요건

(다음과 같이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증된 사항만 인정함)

- ① 경력(재직) 증명서
-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 ※ 합병 등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경력증명서상의 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4대 보험에서 과거 회사 명칭과 현재 회사 명칭의 변경 내역이 나오도록 할 것(국민연금 권장) → 회사 명칭의 변경 내역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경력 전체기간으로 발급 / 예: 2000년 ~ 2024년)
 - ☞ ①, ②, ③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고 확인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 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예: 2025년도분 소득증명, 2024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분 소득증명 / 미제출 시 해당 경력 기간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 제출된 자료는 최종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 직무 관련 자격증, 정보화 관련 자격증

- 국내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직무 관련 자격증,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각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등급별 차등 배점)
 - ※ 우대요건으로 제시된 자격증만 인정함

○ 가산점 제출 유의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아닌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가산점 비율이 표시되지 않은 증명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 가족이 대상이 아님에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 임용 예정 분야, 응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산점 등 사항은 “붙임3” 참조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기준

- 서류전형 위원이 해당 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평가하여 위원들의 점수를 개별 평가 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 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내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동 순위 발생 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8. 10.(월) ~ 8. 21.(금)	'26. 8. 19.(수) ~ 8. 21.(금)	'26. 9. 2.(수)	'26. 9. 8.(화)	'26. 9. 18.(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홈페이지(www.gojobs.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19.(수) ~ 8. 21.(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평일만 접수]

- 원서접수 및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편지 겹봉투에 “**한시임기제 8호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빠른등기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접수기간 전 도착분은 반송처리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처

접수기관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대구교도소 총무과	(우)4290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로 204	053-430-1617,1618	인사담당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신 분들은 반드시 053-430-1617, 1618번으로 응시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목록	비고
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정부 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용
	⑧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⑨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별지서식 제7호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⑪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⑫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10호
	⑬ 주민등록 초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해당자 제출	⑭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⑮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부	
	⑯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1부	
	⑰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⑱ 정보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⑲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⑳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 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 목록 순서로 제출(1개 면당 1개 자격증 사본 제출 / 1개 면에 여라개 자격증 사본 제출 금지)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 대구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대구교도소 의료과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공통(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그 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검색 전체메뉴

민원증명

민원증명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국세청명신청

1.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증명발급 일제안내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01 홈택스 로그인

02 민원증명신청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04 발급완료 후 처리결과

2. <소득금액 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등)

부과과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증명사업장 증명

모병납세자증명

후제납세 증명 조항(영부관리기 관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사실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활동장애 취약계층)지속 가입 및 과세특례

민원증명 신청서

민원증명 신청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등)

민원증명 신청서(부과과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민원증명 신청서(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민원증명 신청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증명사업장 증명)

민원증명 신청서(모병납세자증명)

민원증명 신청서(후제납세 증명 조항(영부관리기 관용))

민원증명 신청서(근로(자녀)장려금 지급사실 증명)

민원증명 신청서(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활동장애 취약계층)지속 가입 및 과세특례)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별지 서식 12) ※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자 본인이 대구교도소 총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별지 서식 13)

- 증명서류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격증과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본인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8호 봉급기준액 : 2,081,000원(주 35시간 근무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산정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 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10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 기간에 한정)
- 대행업무 : 형집행법 및 교도관 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임용예정업무
-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1 안내 및 참고사항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교도소 총무과 (☎ 053-430-1617~1618)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면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 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보건 직렬	한시임기제 (8호, 간호직)	1명	대구교도소 의료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요 업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외상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3항 -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 동행 및 계호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 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지식 ○ 수용자 의료처우 및 보건 등 교정행정에 관한 지식 ○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상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국내 자격증에 한함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해야 함	
우대요건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자(해당자에 한함) ※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이력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안내 등 참조 ○ 직무 관련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 직무 관련 등 자격증 : 이력서 작성 요령, 제출서류 안내 등 참조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첨부해야 함)
⇒ 직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목록 1부	○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확인서 등) 제출 ○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
3. 이력서 1부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경력, 우대사항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와 일자 및 기간을 동일하게 작성) ○ 이력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2매 이내 작성
6.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는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응시자와 시험위원간의 제척관계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9.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 자필 서명 필수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자필 서명 필수
12.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자필 서명 필수
13. 주민등록 초본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역증명서 추가 제출)

구 분	내 용
14. 직무관련분야 경력(제직) 증명서 1부 우대요건 해당 시 제출 (미제출시 우대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용시자격요건 자격증(영양사 면허증) 취득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경력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전 발급 증명서 불인정) ○ 경력(제직)증명서에 용시자격 요건 면허증(영양사)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기재, 예) 주00시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행기관 날인 포함)(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직장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5.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우대요건 해당 시 제출 (미제출시 우대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 택일
16.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1부 우대요건 해당 시 제출 (미제출시 우대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의 모든 기간으로 제출(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모두 표시되어 함) ○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소득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기간은 반드시 별도의 급여 입금 내역 추가 제출 ※ 예) 2026년도 소득은 임금기판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
17.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우대요건 해당 시 제출 (미제출시 우대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취득(소지)한 자격증 중 유리한 상위자격증 1개만 제출
18.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우대요건 해당 시 제출 (미제출시 우대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취득(소지)한 자격증 중 유리한 상위자격증 1개만 제출
1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가산 요건 해당 시 제출 (미제출시 우대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서류) - 가산점 비율이 표시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20.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14~19’ 항목의 내용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을 함께 참조할 것

※ 제출된 서류로만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완요청은 하지 않으니, 응시원서 제출시 신중하게 제출할 것

※ 제출서류상 자필서명, 작성일자, 체크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

※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목록(별지 1)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할 것(스테플러 사용금지)

【 별지 서식 1 】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임용예정기관	채용 분야
	대구교도소	한시임기제 (8호, 간호직)

■ 작성 목록(총괄표)

목 록		제 출 서 류 명	제출 유무	
			제출	미제출
필수 제출	1	제출서류 목록		
	2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부착: 5,000원)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6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9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12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13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		
해당 자만 제출	14	직무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5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부		
	16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1부		
	17	(우대요건)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18	(우대요건)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19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20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1부		

※ 제출한 서류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 표시
※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 별지 서식 2 】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직)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자수입인지(A4크기) 의 경우 응시원서 뒤에 첨부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직)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직)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대 구 교 도 소 장 (인)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날짜, 대구교도소장㉠」' 부분은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직)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5,000원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원서접수기관에서 소인 처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2명 이상 미성년자녀는 응시원서 제출일(방문접수일 또는 동기우편접수일)에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제 가능)

(응시표 회신용 소봉투 기재 예시)

※ 보내는 사람(접수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로 204

대구교도소 총무과 인사담당자

42903

응시원서 우편접수요령

①응시원서 등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②회신용 우편봉투에 응시자 성명·주소를 기입

③대봉투 우측상단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표시

④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와 응시표 회신용 봉투를 넣어 해당기관에 송부

※ 받는사람(응시자)

(성명) 홍 길 동(응시자 본인)

(주소) 응시표 수신 주소

【 별지 서식 3 】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간호직)	응시 자격 요건	간호사 면허증	성명	000
------	----------	------	-----------------------	----------------	---------	----	-----

2.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간호사 면허증	13.12.12.	000

3. 우대요건

직무 관련 분야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00000 (000)	14.01.01. ~ 17.12.05.	(000) 00	· 0000 · 0000 · 0000	상근 (주40시간)
	00000 (000)	17.12.06. ~ 18.12.05. (질병휴직)	(000) 00	-	-
	00000 (000)	18.12.06. ~ 22.12.05.	(000) 00	· 0000 · 0000 · 0000	시간제 (주20시간)

-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취득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경력만 기재(→ 과거 경력(위)부터 최근 경력(아래) 순으로 기재, 경력이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해서 기재)
- ※ 휴직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도 기재
- ※ 근무형태에는 상근(통상근로 주40시간 기준) 또는 시간제(주00시간)로 명확히 기재할 것

직무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시행기관
	응급구조사 1급	2020.01.01.	응급구조사협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위 자격증(등급) 1개만 기재

정보화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일자	시행기관
	워드프로세서 1급	2010.03.1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세부 내용	발행기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처

- ※ 본인에게 유리한 상위 자격증(등급) 1개만 기재
- ※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직무관련분야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등의 사본은 이력서에 기재된 것만 제출
- 자격증(직무관련, 정보화관련)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위 자격증(등급) 중 1개만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 제출
- ☞ 해당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가산점 비율이 표시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아닌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가산점 비율이 표시되지 않은 증명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 가족이 대상이 아님에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경력, 자격증, 상장 등 제출 금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의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기재
- ④ 우대 및 가산 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직무관련분야 경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직무관련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근무형태는 상근(통상근무(전임근로) 주40시간 기준) 또는 시간제(주00시간)으로 표시
 - * 시간제인 경우 상근(통상근무(전임근로)) 근무시간(주40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로(전임근로)가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①경력(재직)증명서 + ②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③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
 - ☞ ①, ②, ③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고 확인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과 우대요건의 자격증(직무관련분야 정보화관련)

-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의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공통)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가산점 _가산점 비율이 표시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참고)

【 별지 서식 4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 (8호, 간호직)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반드시 별지4 서식에 작성할 것)

※ 글자체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60%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①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 공직자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격 장·단점 등

②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 팀웍·리더쉽·협상능력 발휘로 실적 달성 사례, 직무관련 자기개발 등

③ 소속 구성원(또는 고객)과의 관계

 * 직장, 학교 등에서 동료와의 갈등 및 극복사례, 불만민원 처리 등 고객센터서비스 사례 등

④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앞으로의 각오 등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 별지 서식 5 】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 (8호, 간호직)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작성

○ 작성 요령

- 한글(워드)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 : 휴먼명조, 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80%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직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있는 경력, 실적 및 채용 예정분야에서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할 것인지 계획등을 기술

※ 붙임 2 직무기술서 참고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공직자 재직 경력이 없으면 1항 '없음'에만 ✓체크 하고 → 그 외 항목에는 ✓체크 하지 말 것)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공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면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용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 대구교도소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 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대구교도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구교도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 (8호, 간호직)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 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경찰청 시·군청 등 법무부 검찰관실	공무원 채용 관리 (범죄경력, 비위면직 등 결격사유)	범죄경력, 결격사유, 비위면직자 조회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서식 10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대구교도소	한시임기제 (8호, 간호직)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2026. . .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 별지 서식 11 】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경력 사항 (휴직기간 이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	①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비고
	부터	까지					
	'15.1.1.	'19.7.15.	00병원 (내과)	간호사	00000	상근 (주40시간)	
	총 4년 6월 15일						
	'19.7.16.	'20.7.1.	00병원 (내과)	간호사	-	-	직병휴직
총 11월 16일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00000							
주 소 : 00시 000로 00길							
전화번호 : 05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대표자 : 0 0 0 (인)							
① 근무기간 : 응시자격요건 충족(자격증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의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 업무 기재, 근무형태(상근(주40시간), 시간제(주00시간) 명확히 기재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날인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에는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별지 서식 12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illegible]

-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서류전형일 전까지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